

시중에 유통중인 농약, 어떻게 관리되나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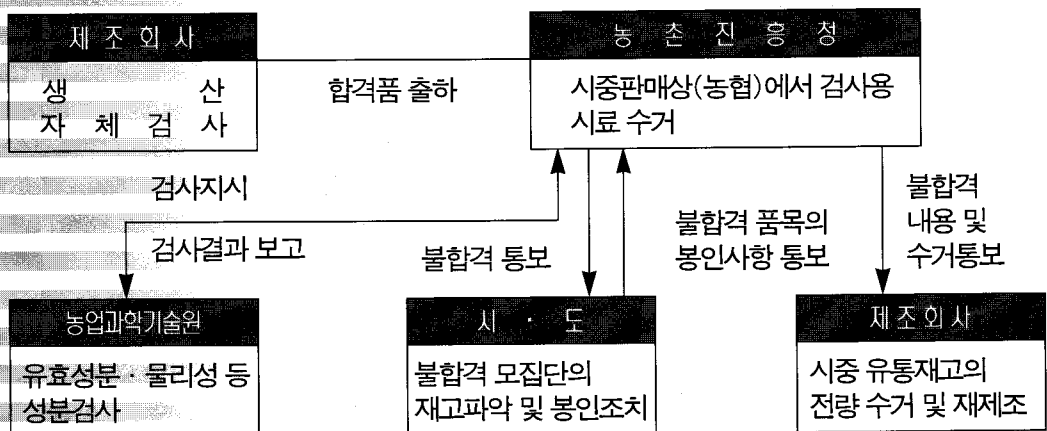
# 농촌진흥청 · 시도 수시 검사 부정 · 불량농약 설 곳 없어

유통농약 무작위 발취, 이화학검사 실시  
전국 20곳 신고센터 설치, 신고자 보상도

홍보부

농약은 외형적으로는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약효, 약해와 독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농업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만 한다. 따라서 제조회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농약만이 생산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시·도에서는 수시로 유통단속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·불량농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.

## ◇ 유통농약의 품질검사 체계



농촌진흥청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약 중 특히 과거 불합격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품목 또는 품질관리 특별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을 수거하여 품질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.

또 유통중인 농약중 시·도 농약검사공무원이 무작위로 발취하여 분석을 의뢰한 농약 및 약해 발생 민원농약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 화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.

이밖에도 유통중인 농약에 대해 포장 및 표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우수한 농약이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.

그러나 일부 약덕업자들이 가짜 부정농약

을 몰래 제조해 유통시키려한 사례가 있어 농업인이 농약을 구입할 때는 부정농약이나 불량농약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.

부정농약이란 제조업이나 수입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몰래 제조하거나 밀수입한 농약을 말한다.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.

- 무등록 농약 : 약효, 약해, 잔류성 등의 시험을 거치지 않아 농약으로 등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효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못했는데 농약으로써의 약효 등을 선전하는 자재

- 밀수입한 외국 농약 : 외국으로부터 밀수입하거나 외국상표를 도용해 밀 제조한 농약으로 외국어로 된 라벨(포장지)을 사용한 농약

-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약효보증기간, 적용병해충 등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로 표시한 농약

불량농약이란 등록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이 유통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변질된 농약을 말한다.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.

- 약효보증기간이 끝난 농약
- 포장지가 훼손되었거나 약액이 새어나와 포장지 내용을 알아보기 어



려운 농약

- 농약품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농약과 같은 모집단의 농약
  -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않은 농약
- 특히 부정농약은 우리 나라에서 안전성, 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 등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키기 쉬우며 농경지 오염이나 인축에 큰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취급해서는 안되겠다.

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관계인이 알아두면 유의할 부정·불량농약의 식별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.

**AGRO114/ 문답으로 알아보는 농약이야기(12)**

- 라벨(농약포장지)에 등록번호가 표시 안 된 농약
  - 특허번호가 있더라도 농약등록번호가 없으면 부정농약(예 : 00-살충-00)
- 판매가격이 현저히 싼 농약
  - 부정농약은 정상제품의 1/2~1/10 가격에 판매
-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점조직 형태로 운 영하거나 차량으로 이동하며 판매하는 농약
  - 비닐하우스 단지 등에서 이동판매
- 라벨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인쇄내용이 조잡하거나 수축테이프 등의 부착상태 가 부실한 농약
- 불법 밀수입되어 주로 외래어로만 표시 되어 있는 농약
  - 농업인들의 외제선호 심리를 이용, 우 리말 라벨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판매
- 모든 병해충 또는 식물생육에 효과가 있 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는 농약
  - 선전문구가 요란하거나 과대 허위선전 등의 유사농약(다수 병해충 예방 및 치

료효과, 생장촉진, 연작장해 방지, 증 수효과 등)

- 포장지 끝에 “이 제품은 비료도 아니고 농약도 아닙니다”로 표시 된 농약  
농촌진흥청에서는 부정·불량농약의 유통 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단속반을 편성하여 판 매업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 고 있어 법규위반 농약 유통이 현저히 줄고 있다.

그러나 아직도 무등록 또는 밀수입 농약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어 전국 20개소에 부정· 불량농약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에 대 한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.

신고대상은 △무등록·밀수입 등 부정농약 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△약효보증기 간에 지났거나 약효보증기간을 표시하지 않 은 농약을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행위 △기타 농약관리법 위반 행위 등이다.

신고는 농촌진흥청, 시·도 또는 시·군 의 농약담당과로 할 수 있고 신고방법은 전 화, 우편, 엽서, FAX 등 어떤 방법도 가능 하다. **농약정보**

**◇ 부정·불량농약 신고보상금액**

신 고 내 용	보 상 금 액
○ 무등록농약 밀조 행위	10만원
○ 무등록·밀수입농약 유통판매 행위	5만원
○ 표시사항을 위·변조하여 허위표시를 한 농약의 판매행위	5만원
○ 농약을 개포장 또는 분포장 하여 판매하는 행위	5만원
○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유사농약 판매행위	5만원
○ 포장지 훼손 및 약액누출로 식별이 곤란한 농약을 판매하는행위	3만원
○ 자체검사필증 미부착 농약 또는 불합격모집단 농약의 판매행위	3만원